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5 발의연월일: 2020. 6. 5.

발 의 자:조승래・이정문・김회재

신동근 • 박홍근 • 서영석

조성식 · 서영교 · 김병기

도종환 · 김민기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이번 코로나19 발생에 대처하면서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등교중지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음.

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환자 또는 감염 의심자단위에서의 조치일 뿐 잠복기 상태로 검역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에 복귀하여 발병 후 감염병을 전파시킬 위험성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 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,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

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및 교직원에게 등교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, 감염병 예방을 위해 휴업 또는 휴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2조제3호,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신설, 제14조).

법률 제 호
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"관할청"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도·감독기관을 말한다.
 - 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1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및 「초·중등 교육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: 교육부장관
 - 나.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립학교와 사립학교: 교육감(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교육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- 다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: 교육부장관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 교육부장관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

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.

- 1. 「검역법」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 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 이 우려되는 사람
- 2.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 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
- 3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(自家)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
- 4. 그 밖에 학교 내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등교 중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) 교육부장관, 관계 중 앙행정기관(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)의 장,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의 규정에 따른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14조(질병의 예방) ① 학교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 요하면 휴업을 할 수 있으며, 관할청은 해당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 - 1.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휴업 또는 등교수업일 조정

2. 휴교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인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"관할청"이란 다음 각 목의
	<u>구분에 따른 지도·감독기관</u>
	<u>을 말한다.</u>
	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1
	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및
	<u>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</u>
	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: 교
	<u>육부장관</u>
	나.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2
	호와 제3호에 따른 공립유
	치원과 사립유치원 및
	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
	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
	립학교와 사립학교: 교육감
	(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
	법률」 제26조제1항에 따
	라 하급교육행정기관에 권
	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교
	육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	다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

제8조(등교 중지) (생 략)

<신 설>

<u>따른 학교: 교육부장관</u> 제8조(등교 중지) <u>①</u>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- ② 교육부장관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도는 교직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.
- 1. 「검역법」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
- 2.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
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
 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
 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
 사람
- 3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

<신 설>

제14조(질병의 예방) 감독청의 장 제14조(질병의 예방) ① 학교의 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 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의 휴업 또는 휴교(휴원을 포함한다. 이 하 같다)를 명할 수 있으며, 학 📗 교의 장은 필요할 때에 휴업할

관한 법률 | 제42조제2항제1 호에 따라 자가(自家)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

4. 그 밖에 학교 내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 여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제8조의2(등교 중지를 위한 개인 정보의 처리 등) 교육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(그 소속기 관을 포함한다)의 장,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 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 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개인정 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「개 인정보 보호법」의 규정에 따 른다.

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 건에 필요하면 휴업을 할 수 있으며, 관할청은 해당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수 있다.

있다.

-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
 휴업 또는 등교수업일 조정
 휴교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인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른 조치를하는 경우 교육감 또는 학교의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